

2020년 7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지과 과 장 김동현(044-201-1731), 기술서기관 최문환(1742)/ 제공일: 6월 30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,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- 『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』 개정 시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개정*으로 농지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“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” 제도 시행(20.7.1.)
 - * 법률 제16792호, 2019.12.10. 공포, 2020.7.1. 시행
- 전용계좌인 “농지연금지킴이” 통장(전국 농협에서 개설 가능)을 통해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농지연금은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됨
- ◆ 아울러,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 범위 확대*, 임대수탁**이 가능한 농지의 면적 제한(1천㎡ 이상) 폐지 등 제도개선
 - * 이농·전업·고령·은퇴농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 →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및 상속·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까지 포함
 - **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7월 1일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(이하 농어촌공사법) 시행령을 개정·공포하여, “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” 제도를 시행한다.

□ 농지연금*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농지 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** 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.

*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(세부사항 붙임 참조)

** 대법원 1999. 10. 6. 자 99마4857 결정[채권압류 및 전부명령]

○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.

-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, “농지연금지킴이”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,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.

○ 또한,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 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,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.

□ 아울러,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 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되었다.

○ 첫째,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*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.

* 고령·은퇴농업인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·임차하여 청년농, 일반농, 전업농 등에 매도·임대 지원하는 사업

-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이농·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로 한정하여 우량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,
-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 확보·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둘째,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* 대상 농지를 확대한다.

*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

-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면적을 1천㎡ 이상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
-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

○ 아울러 “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 및 임대수탁을 확대하여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참고 1

농어촌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

-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 도입(법 제24조의6, 제24조의7, 영 제19조의15, 영 제19조의16 신설)
 - (개요) 농지연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
 - (입금액) 「민사집행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상한
 - (신청방법)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 시 본인 명의의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* 기재 및 통장사본 제출
 - * 전국 NH농협, 지역농협에서 “농지연금지킴이” 통장으로 개설 가능
-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 확대(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, 제4호 신설)
 - (현행)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으로 이농·전업·고령·은퇴농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
 - (변경)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및 상속·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까지 대상을 확대
- 임대수탁 대상 농지 확대(영 제19조의7제1항 개정)
 - (현행) 농어촌공사가 임대 등의 수탁(受託)을 할 수 있는 농지 의 하한면적을 1천㎡로 제한
 - (변경) 하한면적 폐지

참고 2

농지연금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(11년~)
 - 가입조건 : 만 65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
 - 지급방식 : **종신형**(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), **기간형**(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: 5,10,15년형), **전후후박형**(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), **일시인출형**(대출한도액의 30%까지 인출가능), **경영이양형**(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%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)
 - 월 지급금 : 상한액 3백만원/월
 - *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
 - 담보물 평가율 : 개별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
 - 연금해지 : 언제든지 **채무상환**(월 지급금 총액 + 이자율 20% + 위험부담금 0.5%) 후 약정 해지 가능
 - *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→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(또는 상속인)에게 상환
 - 기타 : **담보농지 활용***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
 - *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 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
 - 사업추진 절차



* 지원근거 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

□ (사업실적) '20.5월말까지 총 16,149건 가입

구분	'11~'14	'15	'16	'17	'18	'19	'20.5	누계
건수	3,963	1,243	1,577	1,848	2,652	3,209	1,657	16,149